



Overweight

2026년 6월 19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국방생산법 제708조 발동: 미 방산 실적의 증장기 모멘텀

트럼프 대통령,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 발동

미국 현지시각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 제708조에 따른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은 국가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부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는 국가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과 미사일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결정문은 6월 16일 사전 공개됐고 6월 1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됐다.

이번 조치는 Title I, III, VII 중 VII에 해당. 직접적인 정부 재정 효과는 제한적

미국 국방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은 민간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산업계에 개입할 수 있다. 원래 국방생산법은 7개 Title 체계였으나 현재 핵심 권한은 크게 Title I, Title III, Title VII 중심으로 남아 있다. Title I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가 민간 수요보다 먼저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itle III는 정부의 대출보증, 직접대출, 구매약정, 보조금 등을 통해 국가방위에 필요한 품목의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조항군이다. Title VII는 국방생산법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Title VII의 제708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Title I의 방산 우선주문이나 Title III의 자금지원과 달리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재고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현재 재고 부족을 직접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미래 수요와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능력 보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증장기적으로 미 방산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 요인

이번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는 미국 탄약, 미사일 공급 병목을 대통령 명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방산업체 간 자발적 협정과 실행계획을 통해 병목 품목과 공급망 취약 지점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재확인될 경우 향후 국방생산법 Title I 우선주문이나 Title III 정부의 구매약정, 보조금, 설비투자 지원 등 후속 정책 수단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FY2027 미 국방예산 확대와 FY2028에도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무기 공급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증장기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이다. 특히 탄약, 미사일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RTX, Lockheed Martin)에 우호적인 이슈로 판단한다. 다만 탄약, 미사일 무기체계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납기가 길고 증설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도표1. 미국 국방생산법의 주요 Title 및 조항 구성

구분	DPA 기준 조항	제목	핵심 내용
Title I	제101조	계약 및 주문의 우선순위	국가방위에 필요한 계약·주문을 민간 주문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제102조	지정 희소물자 사재기 금지	지정된 희소물자의 매점매석을 금지
	제103조	벌칙	Title I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부과
	제104조	의회 승인 없는 조치 제한	의회 승인 없는 임금·가격통제 등을 제한
	제105조	휘발유 배급 권한 제한	의회 승인 없는 휘발유 배급제를 제한
	제106조	에너지의 전략·핵심 물자 지정	에너지를 전략·핵심 물자로 지정하되, 가격통제 권한은 제한
	제107조	국내 역량 강화	핵심부품·기술·소재의 국내 생산능력 강화를 지원
	제108조	중소 협력업체 현대화	중소 공급업체의 설비 현대화와 참여 확대를 지원
Title III	제301조	국가방위를 위한 대통령 승인	국가방위에 필요한 품목 생산을 위해 민간 대출을 정부가 보증
	제302조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에 직접 대출 제공
	제303조	기타 대통령 조치 승인	구매약정, 보조금,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304조	국방생산법 기금	Title III 사업 집행을 위한 별도 기금 운용
	제305조	권한 행사 보고	Title III 권한 사용 시 의회 보고 의무
Title VII	제701조	중소기업	DPA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보장
	제702조	정의	국가방위, 국내 산업기반, 핵심기술 등 주요 용어 정의
	제703조	민간 인력	DPA 수행을 위한 민간 인력 임명 근거
	제704조	규칙 및 명령	DPA 집행을 위한 규칙과 명령 발령 근거
	제705조	조사·기록·보고·소환	산업기반 조사와 정보 제출 요구 권한
	제706조	법원 관할 및 집행 절차	DPA 위반 시 법적 집행 절차 규정
	제707조	명령 이행 책임 면제 및 차별 금지	정부 명령 이행자 보호와 우선주문 차별 금지
	제708조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	정부 감독 아래 산업계 공동 대응과 실행계획 수립 허용
	제709조	규칙 제정 시 대중 참여	DPA 관련 규칙 제정 시 공고와 의견수렴 절차 규정
	제710조	인력 활용 및 기밀정보 관리	전문가 활용, 예비 행정인력 운용, 기밀정보 남용 방지
	제711조	예산 승인 및 자금 사용	DPA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근거
	제712조	적용 지역	DPA 적용 지역을 미국 본토·영토 등으로 규정
	제713조	분리 가능성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유지
	제714조	법 효력 종료	DPA 권한의 종료 시점과 예외 조항 규정
	제721조	특정 인수·합병 심사 권한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시 국가안보 심사 근거
제722조	국방생산법 위원회	DPA 권한 사용을 조정하는 부처 간 위원회 설치	
제723조	오프셋 영향 연례보고	해외 방산계약 오프셋이 미국 산업기반에 미치는 영향 보고	

자료: U.S. Code,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생)는 2026년 6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9%	2.7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6월 16일